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3. 11.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복지정책과]

제 안 설 명 서

설명자: 복지정책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운용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 12. 31.자에서 5년 연장하여 2028. 12. 31.자로 개정하고,
- 안 전반에 걸쳐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 본 조례안을 2023. 8. 11일부터 8.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 2023. 11. 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별도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안 전반을 정비하여 의료급여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00923/50
----------	----------

제출년월일 : 2023. 11. 3.
제출자 : 달서구청장
(복지정책과장)

1. 개정이유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용어 수정 등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7조)
- 나. 용어 수정 등(안 전반)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 2)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23. 8. 11.~2023. 8. 31.) 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비해당
 - 4)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원안 동의
 - 5)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6)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사용”을 “사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업무담당팀장”을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u>의료보호기금</u>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u>사용</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의료급여기금</u> ----- -----<u>사용</u>----- -----.</p>
<p>제4조(회계공무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담당관을 복지정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u>업무담당팀장</u>으로 한다.</p>	<p>제4조(회계공무원) ----- ----- ----- ----- ----- <u>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u>-----.</p>
<p>제7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7조(회계의 존속기한) ----- -----<u>2028년 12월 31일</u>----- ----- -----.</p>

【 관련 법령 】

□ 「지방재정법」

-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급여법」

-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
-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금을 교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계정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료급여비용심사위탁수수료, 수급권자전산관리위탁수수료, 급여비용지급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 위탁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의료급여기금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⑦ 법 제2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수당·일용잡급·국내여비·교육비·수용비·수수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구입비(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이 경우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기금지출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 ⑧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금계정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⑨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